

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
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
소재부품 및 플랫폼 상용화 기술을 통해 구미시의 미래성장
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『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사업화
지원센터』가 2017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,
- 나. 사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(재)구미전자정
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장비구축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여
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개요

(1) 대상기관

- 기 관 명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대 표 : 남유진

- 소 재 지 :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
(2) 출연예정액 : 금830,000천원(도비 250,000, 시비 580,000)

※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후 1차년도 장비구축 및 운영비

나. 주요사업

(1) 사 업 명 :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

(2) 사업기간 : 2016년 ~ 2020년(5년간)

(3) 위 치 : 구미대로 350-27(금오테크노밸리 內)

(4) 주 관 : 미래부, 산업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(5) 총사업비 : 1,282.8억원(국비 819 지방비 97.4 민자 366.4)

※ 센터건립(리모델링) 및 장비구축 : 172.4억(센터 50 장비 100 운영 22.4)

(6) 사업내용

- 기반구축 : 사업화지원센터 구축(4층, 4,167m²)

- 연구개발(국가직접수행) : 소재부품 및 플랫폼 기술 개발

- 웨어러블 산업 핵심분야(디바이스, 서비스) 앵커기업 유치

- 전문기업 발굴 후 패키지사업(디바이스-망-서비스)형 시장
진입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

(7) 연도별 소요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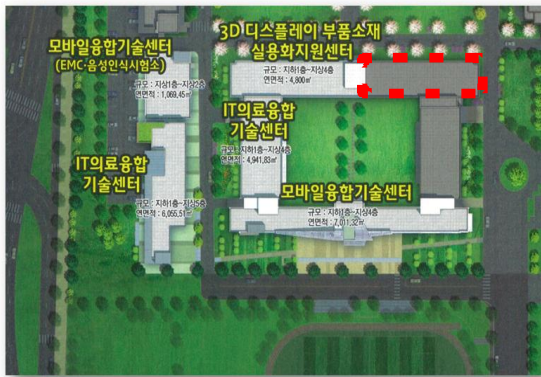
구분	재원	계	'16년	'17년	'18년	19년	'20년
총계	총 계	1,282.8	73.2	400.6	296.1	289.1	223.8
	국 비	819.0	40.0	243.9	197.55	192.85	144.7
	도 비	25.9	6.75	7.45	2.8	2.8	6.1
	시 비	71.5	6.75	37.35	6.55	6.55	14.30
	민 자	366.4	19.7	111.9	89.2	86.9	58.7
연구개발	소 계	1110.4	59.7	339.2	270.3	263.3	177.9
	국 비	744.0	40.0	227.3	181.1	176.4	119.2
	민 자	366.4	19.7	111.9	89.2	86.9	58.7
지원센터	소 계	50.0	13.5	36.5	-	-	-
	국 비	-	-	-	-	-	-
	도 비	11.70	6.75	4.95	-	-	-
	시 비	38.30	6.75	31.55	-	-	-
장비구축	소 계	100.0	-	22.2	21.9	21.9	34.0
	국 비	75.0	-	16.6	16.45	16.45	25.5
	도 비	7.5	-	1.7	1.65	1.65	2.5
	시 비	17.5	-	3.9	3.8	3.8	6.0
운영비	소 계	22.4	-	2.7	3.9	3.9	11.9
	도 비	6.7	-	0.8	1.15	1.15	3.6
	시 비	15.7	-	1.9	2.75	2.75	8.3

(8) 추진현황

- '14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(기재부) : '14. 4. 11
-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 (B/C 1.02) : '15. 11. 23
-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 : '16. 3. 2
- 사업화지원센터 구축(리모델링) 설계실시 : '16. 9월

(9) 향후계획

- 사업화지원센터 준공 : '17. 연중



조성 위치



조감도

-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기반마련
 - 기술개발 → 시험·검증 및 시장 요구사항 재도출(본 사업) → 사업화 및 기술개발 재반영 등
 -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분야 상용화 지원 장비 및 통합 테스트 베드 구축
- ※ 플랫폼 연동 시험 장비 총 13종 도입(100억원)

구 분	플랫폼 분야			합계
	생활·문화	특수임무	사용자기기 연결	
성능평가/분석	2종	3종	3종	8종
실증화	-	2종	3종	5종
합 계	2종	5종	6종	13종

▶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험 및 인증

-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다양한 국가 및 국제 표준 시험·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함
 -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신뢰성은 배터리 수명주기 시험, 무선 주파수 장비 시험, 전자파 인체흡수율 시험, 생체 적합성 평가, 화학시험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험 등이 있음

- 웨어러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
 - 웨어러블 산업 핵심요소인 입력, 출력, 제어 플랫폼 활용을 위한 데이터분석·거래 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집적화 유도
 - 대기업과 협력기업 및 지역전문기업간의 협업을 통하여 기존의 산업구조를 웨어러블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 지원
 - 앵커기업 및 지역전문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화의 생산·서비스 집적화
 - 웨어러블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센서, 디바이스, 응용부분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각 부분별 사업화지원
 - 웨어러블 플랫폼 및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차세대 디바이스 서비스 컨퍼런스 및 마켓플레이스



〈웨어러블 산업 생태계 조성〉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대통령의 지역공약(경북-① IT융복합신산업벨트 조성) 사업
- (2)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의 상용화·사업화를 위해

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「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」를 구축하여 지역 강소기업 육성

(3)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(GERI)

- 모바일융합기술센터, IT의료융합기술센터,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 등 운영 노하우와 구미IT산업 환경을 잘 이해하는 전문 인력 보유
- 구미시 출연기관으로서 전문적 운영과 유기적 협력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(3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(4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5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예산편성

- (1) 장비구축비 : 22.2억원 (국 16.6 도 1.7 시 3.9)
- (2) 운영비 : 2.7억원(도 0.8 시 1.9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

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

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
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

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

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

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

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

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
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
(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

이하 "산업기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
장비·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
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
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
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
마케팅·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
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10. 삭제 <2013.3.23.>
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
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
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
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

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
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
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

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

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

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

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·

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은 "

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
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

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

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관리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유 익 수
	담 당	민 명 숙
	담 당 자	김 지 훈 (480-6147)